

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공동체의 이익을 착취하는 도둑협정

얼마 전 타결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TPP)에 이어 또 하나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적 밀실협정이 교섭 중에 있다. TPP와 마찬가지로 이 협정은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며, 공익법이나 각 정부가 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보다 기업의 권리 (corporate rights)를 더 우위에 둬므로써 불평등을 제도화시킬 것이다. 이름조차 모호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은 사실 대기업들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6개 무역 파트너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다. 가까운 미래에 TPP와 RCE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경제적 청사진을 함께 구축하게 될 것이다.

현재 밑그림 상으로 RCEP에 참여한 국가들을 합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50%와 세계 국내총생산(GDP) 29%의 규모에 달한다. 해당 협정은 상품무역, 서비스, 농업, 세관 및 관세, 그리고 무역보조금과 같은 무역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협정 내용 중 지극히 일부만을 차지한다. 정작 협정의 주용 내용은 무역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오히려, 부유한 국가들과 대기업들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경을 넘어 국내 비(非)무역 정책에 대한 제약을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환경, 농업, 투자, 통신, 비자 (visa), 노동, 지적 재산권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RCEP으로 인해 발생할 사안들은 사람들의 생계와 생존에 있어 전무후무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RCEP 참여국

- 현재로는 호주,
- 브루나이,
- 캄보디아,
- 중국,
- 인도네시아,
- 인도,
- 일본,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뉴질랜드,
- 필리핀,
- 싱가포르,
- 대한민국,
- 태국,
- 베트남이나
- 향후 추가 예정이다.

RCEP는

50% 세계 인구의

29%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에 영향을 미치는 전대미문의 대규모 자유무역 협정이다.

아시아 태평양은 누구의 '중심축'이 될 것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RCEP은 미국 주도의 TPP에 맞선 중국 주도의 대항마이다. 그동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경제적 패권을 오랫동안 장악해왔으나,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경제적 위상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두 협정 모두 '자유무역협정'으로 알려져있지만 사실 TPP와 RCEP간의 경쟁은 결국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접수'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의 입장에서 RCEP은 자국 기업 투자자들이 인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아세안 국가 내에서 보다 강력하게 자국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평등이 단지 국가 내의 문제가 아닌 국가 간, 더 나아가 강대국 (global power)과 그 외 국가들간의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무역 협정들은 빈곤국 및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이익과 주권을 보호하고 추구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는 페미니스트 단체 및 여성들을 잇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선두적인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아태지역 26개국에서 200개가 넘는 단체 및 개인 회원들이 다양한 그룹을 대표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간 APWLD는 여성들이 법을 통해 평등, 정의, 평화와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APWLD는 연구와 훈련, 옹호활동 및 시민 행동을 통해 여성 인권을 촉구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권력의 새로운 시대

기존의 무역 협정들과는 다른 투자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는 초반의 논의를 뒤집고 현재의 RCEP제안서에는 TPP의 관련 조항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투자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이하 ISDS)로 알려진 이 조항은 국가나 일반인이 아닌 오로지 기업과 외국 투자자만을 보호한다. 이는 외국의 기업/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혹은 규정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해당 국가를 비공개 재판소를 통해 국제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ISDS는 투자자들에게 국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국가는 투자자들을 고소할 권리가 없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 조항은 늘상 존재해왔던 것이지만 TPP와 RCEP상에서 투자자들은 이전의 그 어떤 무역협정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ISDS를 빌미로 법적인 세금을 피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을 무시하며, 지적 재산권에 제약을 두는 정부에 맞서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또한 ISDS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법을 제정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민주적인 기관들을 회피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특수한 위치와 능력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법이나 환경보호 및 기후 정책, 공공 보건법이나 식품내용 표시법 등이 바로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ISDS의 사례들은 선진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 사법 체계를 우회하여 정부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외국 기업뿐이며, 따라서 이들은 공기업이나 국내기업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권한과 보호를 누리게 된다. 다시 말해 ISDS는 개발도상국들의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공격하고 박탈하는 조항인 것이다.

표 2. 연도별, 누적 ISDS 사례 현황 (1957년-2015년 기준)



출처: UNCTAD, ISDS 데이터베이스, 2015년도 예비조사 결과지

Note: Information about 2015 claims has been compiled on the basis of public sources, including specialized reporting services. UNCTAD's statistics do not cover investor-State cases that are based exclusively on investment contracts (State contracts) or national investment laws, or cases in which a party has signalled its intention to submit a claim to ISDS but has not commenced the arbitration. Annual and cumulative case numbers are continuously adjusted as a result of verification and may not match case numbers reported in previous years.

ISDS는 국내법과 국내법원 체계 밖에 있는 비공개 재판소에서 운영되며, 이곳에서는 기업 변호사들이 판사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해당사자를 대표하기도 한다. 이 비밀스러운 재판에는 판결을 공개하거나 참관인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도 없고, 항소절차도 없다.

이탈리아 기업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에 따르면, 아파르헤이트(인종차별정책) 폐지 이후 차별철폐조치의 일환으로 광물 자원 회사들의 주주의 50%를 반드시 흑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탈리아 기업들의 투자에 손실이 있었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해당 사례는 결국 남아공 정부가 기존의 50% 할당비율에서 26%로 감소시킨 후에야 일단락되었다.



에콰도르 법원이 아마존 오염에 대한 책임의 대가로 셰브론에 미화 950억 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셰브론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곧바로 ISDS를 이용하여 에콰도르를 제소했다.



독일기업 Fraport는 필리핀 정부가 부패혐의를 이유로 계약의 재협상을 요구하자 곧바로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를 상대하는 법적 비용으로 필리핀 정부는 미화 5,800만 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폐기물 관리업체 메탈클래드는 멕시코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소송에서 승소한 후 미화 1,560 만 불을 받았다. 이는 멕시코 주 정부가 폐기물 처리로 인해 발생할 독소가 토양과 식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이다.



RCEP 체제 하에서 예상되는 문제들...



국가는 기업들이 노동, 환경, 보건 및 토지사용제한법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기대수익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할 경우 매우 취약한 위치에 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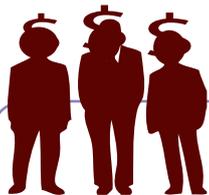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율적인(self-regulated) 환경법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제정한 환경보호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



RCEP 참여국들의 시민들은 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HIV/AIDS) 등을 치료하는 제네릭 의약품 (혹은 복제약품)의 사용이 제약될 수 있다. 거대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보다 강화된 권력을 가지게 되면 결국 특허독점의 연장, 의약품 가격 폭등 그리고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약품에 대한 데이터독점의 결과들이 파생될 것이 자명하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관련 규율과 GMO 내용표시가 금지될 것이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자들의 활동 내용을 규제하고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소규모 데이터 공유를 하다 적발될 경우 대규모 저작권 침해와 같은 수준으로 벌금을 내게 될 것이다.



그 누구보다 패재를 부를 이들은 금융권이다. 금융 규제완화가 만연할 것이며 고위험 금융 상품과 서비스들에 대한 봉인이 풀릴 것이다. RCEP은 또한 투기자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 금지할 것이며 기업 책무 (corporate accountability)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모든 활동 또한 무력화시킬 것이다.

현재 제안된 RCEP의 장(chapter) 및 부속문서:

- 원산지 규정
- 세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기준,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 절차
- 서비스 무역
- 통신
- 전자 상거래
- 투자
- 경제 및 기술 협력
- 지적재산
- 경쟁
- 일반 규정 및 예외
- 분쟁해결
- 금융 서비스
- 관세 약속 양허표
- 품목별 기준에 관한 부속문서
- 서비스 및 투자 명세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비밀(backdoor) 메커니즘

무엇보다 이러한 초국가적인 법률체계는 밀실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4년 간 RCEP에 대한 내용은 대중은 물론이고 참여국들의 의회 의원이나 시민단체, 언론 혹은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다. 참여국의 정부 관계자와 협상할 기회가 일부 기업 집단들에게는 주어졌지만, 합의 결과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일반 시민에게는 그 어떠한 참여기회도 없었다. 특히 취약한 국가와 집단들은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지 인지도 하지 못한 채 기업의 손에 그들의 운명을 맡기게 된 상황이 되었다.

그나마 알려진 RCEP에 대한 일부 내용은 유출 문서의 내용일 뿐이다. 처음 RCEP이 기획될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에 규제조화 (regulatory harmonization) 요건을 완화하고 무역장벽을 서서히 낮추는 등 개발도상국, 그 중에서도 특히 후발개발도상국들에 조금 더 좋은 기회와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유출된 두 건의 문서에 따르면 RCEP은 사람들의 약품접근성을 위협하는 한편 ISDS를 통해 기업들의 위상을 굳건히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CEP은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기업의 침략을 노골적으로 눈감아주는 예가 될 것이다.

모든 이에게 부당하지만 여성들에게는 더욱 참혹할 미래

경쟁, 민영화, 자유화, 탈규제 정책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혹독한 영향을 끼친다. 한편 여성은 전 세계 빈곤층의 70%를 차지한다.

공공 서비스 - 여성은 공공서비스와 사회 안전망에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의지해 살아간다. 공공 예산의 삭감은 가난한 이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중 직격탄을 맞을 이들은 가난한 여성들이다. RCEP은 개발도상국의 공공서비스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세삭감은 정부 수입의 중요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ISDS 사례 대응의 일환으로 지불하게 되는 과도한 비용은 공공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RCEP은 또한 공공서비스 내에서 민간 부분의 경쟁과 참여를 부추길 것인데 그동안 의료와 교육, 식수, 에너지, 공공서비스 등의 민영화로 인해 여성들이 입은 피해는 여러 사례들로 증명된 바 있다. 기업들은 빈곤층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이는 결국 사회 및 젠더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ISDS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비용으로 미화 5,800만 불을 지불한 바 있는데, 이는 12,500명의 교사들의 1년 치 연봉, 또는 380만 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비용, 혹은 2개의 신공항을 건축할 수 있는 비용에 상응하는 액수이다.

토지와 자원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생계형 농민 (subsistence farmers)의 대부분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토지와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 및 지배권은 철저히 부인되어 왔다. 토지수탈, 지구 온난화, 대규모 개발 등은 소작농들의 토지와 보금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이주민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RCEP과 같은 협정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 토지와 천연자원들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잘못된 개발 (mal-development)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법이나 그와 관련된 계획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들은 생계형 농민들을 거대 농업 기업들의 권력에 굴복하게 만들고 농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계와 상관없이 돈이 되는 현금작물들로 전환하게 만든다. RCEP은 심지어 정부가 국제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보다 한 발 더 앞서 가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 예로 기업의 독점 종자를 농민이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 - 의료 서비스 비용이 높아질수록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은 여성이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때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건강은 가장 후순위의 문제가 된다. 인도와 중국은 전 세계 가장 가난한 이들도 접근할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 (복제약품)의 주요 공급 국가이다. 인도의 복제약품 제조회사가 HIV 의약품의 가격을 낮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것은 사권(私權)과 공공 이익의 균형을 요구하는 인도의 지적재산법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RCEP은 기본 의약품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무분별한 특권과 소유권을 제약회사에 내어줄 것이다. RCEP은 대다수 RCEP 참여 국가들의 현재 지적재산권협정 및 지적재산법을 뛰어넘는 독점권 보호를 제약회사들에게 보장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많은 이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복제약품의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제약회사인 엘리 릴리사(Eli Lilly)가 특허신청 시에 보장한 혜택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캐나다 법원이 새로운 특허신청을 기각하자, 엘리 릴리사는 캐나다 정부를 대상으로 특허 독점 무효화로 인한 미래수의 손해금으로 미화 4억 8100 만 불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제소한 바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임금 - 여성을 최하위에 둔 하향식 경쟁인 RCEP은 노동 경쟁은 부추기지만 노동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RCEP과 같은 무역 협정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쟁 논리에 기반을 둔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국제 자본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입국 내 값싼 노동과 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대시킨다. RCEP은 수출 중심의 경제를 조장하면서 내수경제는 점점 힘을 잃게 만들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 3분의 2가 안전 및 기본 수당 등 노동 환경에 있어 기본 조건이 부재한 '취약한 고용' 형태에 속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수출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임금과 노동환경 및 노동권에 있어 하향식 압력을 받게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탈리아 투자자들은 남아공의 차별철폐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흑인경제육성정책(BEE)이 투자자들의 이익을 몰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집트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제기된 ISDS 소송에 맞서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잠정적 특별 조치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거나 여성 및 기타 소외계층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등의 조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있다면, 그들도 예외없이 ISDS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공동의 위기에 대항해 함께 행동합시다

지금 우리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국제적 위선(hypocrisy)을 마주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앞으로의 15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아젠다2030의 실행을 약속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TPP와 RCEP과 같은 무역협정을 통해 불평등과 착취를 고착시키려는 움직임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무역협정과 달리 아젠다 2030은 강제구속력이 없다. 아젠다 2030을 통해 이룩한 진전은 결국 RCEP에의 참여로 약화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을 이득보다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 구조이다.

민중운동(people's movements)은 여전히 강력하다. RCEP에 반대하는 국내 및 지역 시민단체와 활동들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불평등과 환경 위기가 더욱 극심해질수록 많은 이들이 바라는 '모두를 위한' 평등과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 정의, 인권과 존엄을 실현할 새로운 방법과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RCEP이 완전히 철폐되기를 요구한다. 동시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남성과 여성, 국가 간의 부와 권력, 자원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RCEP 에 저항하는 시민 사회 행동과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으신 개인 및 단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담당자 이메일: diyana@apwld.org